

-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-  
**기간제근로자(구급분야) 채용 공고**

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기간제근로자(구급분야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2년 1월 28일

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

**I 채용개요**

가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직종	채용기간	채용분야 (담당업무)	인원	근무예정부서
기간제 근로자	6개월*	응급처치 및 이송업무	108명	11개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

\* 6개월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1개월 단위 계약연장 가능

나. 근무기관 및 선발예정인원

순	근무기관	인원	소방서 소재지	비고
합 계		108명		
1	중부소방서	12명	중구 중앙대로 110 (중앙동4가)	
2	부산진소방서	12명	부산진구 서전로 43 (전포동)	
3	동래소방서	12명	연제구 고분로 216 (연산동)	
4	북부소방서	12명	사상구 삼덕로 17 (삼락동)	

순	근무기관	인원	소방서 소재지	비고
5	사하소방서	6명	사하구 장평로 270 (신평동)	
6	해운대소방서	12명	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6 (우동)	
7	금정소방서	12명	금정구 중앙대로 1789 (부곡동)	
8	남부소방서	12명	수영구 광일로 64 (광안동)	
9	강서소방서	6명	강서구 녹산산단361로 9 (송정동)	
10	기장소방서	6명	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7 (용수리)	
11	항만소방서	6명	영도구 해양로 297 (동삼동)	

☞ 근무기관 중 희망근무지를 1-2-3지망으로 응시원서에 기재

☞ 최종합격 순위에 따라 배치(근로계약 체결) 예정

※ 단, 소방서별 결원발생 시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희망근무지 외 타 소방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합격 가능

다. 근무예정부서

○ 해당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배치·근무 예정

○ 소방서별 119안전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【붙임 1】 참고

## II 응시자격

가. 자격요건

○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\*)

\* 졸업예정자 범위 : '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'에서 제공하는 합격증명서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

○ 경력 및 자격 우대

### 경력 및 자격 우대요건

▶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자

▶ 1종 보통(대형)운전면허 소지자

- 18세 이상으로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울산경남인 자
  - 남자인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나. 결격사유

-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」 제13조(결격사유)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◎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◎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」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다. 가산점 적용 ▶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미적용

- 취업지원대상자 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만점의 5% 또는 10% 부여
  - ☞ 선발예정인원의 30% 이내
- 의사상자 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만점의 3% 또는 5% 부여
  - ☞ 선발예정인원의 10% 이내

### Ⅲ 채용일정

#### 가. 채용절차

- 채용시험 : 공고 ⇒ 원서접수 ⇒ 서류전형 ⇒ 면접시험 ⇒ 최종합격자 발표
- 계약 : 결격사유 등 최종 응시자격 검증확인 후 근로계약 ⇒ 근로개시

#### 나. 세부일정(안)

내용	일정	세부사항
채용공고	1. 28.(금) ~ 2. 8.(화)	부산광역시 홈페이지(고시공고)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(알림마당-시험정보)
원서접수	2. 8.(화) ~ 11.(금)	<b>등기우편 및 전자우편</b> (문의) 051-760-3117
서류전형 합격발표	2. 18.(금)	부산광역시 홈페이지(고시공고)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(알림마당-시험정보)
면접시험	2. 23.(수) ~ 24.(목)	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
최종발표	3. 4.(금)	부산광역시 홈페이지(고시공고)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(알림마당-시험정보)
계약체결	별도 통보	근무예정 소방서에서 별도 안내

### Ⅳ 원서접수

가. 접수기간 : '22. 2. 8.(화) ~ 2. 11.(금) 18:00까지 / 4일간

나.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(이메일)
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
-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행 당일에 배부

다. 접수처

- (등기우편)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(연산동)  
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채용담당자 앞 (우편번호 : 47586)
- (전자우편) [emtpro@korea.kr](mailto:emtpro@korea.kr) ※ 제목은 “기간제 원서접수(본인 성명)”로 기재

## V 채용방법

### 가. 제1차 서류전형

- 평가방법 : 응시자격 구비 여부 심사 및 평가 ☞ 적합자 합격
-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**2배수**를 초과할 경우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**2배수** 선발(동점자 전원 합격)
- 배점기준

평가항목	배점	내 용						
관련분야 근무경력	4점	▶ 공고일 전일 기준 직무관련 근무경력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기간</th> <th>1년 미만</th> <th>1년 이상~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 <td>1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~	점수	1	2
		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~				
점수	1	2						
▶ 공고일 전일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운전면허</th> <th>미소지</th> <th>1종보통</th> <th>1종대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 <td>0</td> <td>1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운전면허	미소지	1종보통	1종대형	점수	0	1	2
운전면허	미소지	1종보통	1종대형					
점수	0	1	2					

### ◎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

**1급 응급구조사** 자격 또는 **간호사** 면허를 취득한 후 다음 기관에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

- **응급의료업무**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
- **간호업무**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

- 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
  - ※ 의료기관 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
- 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
- ③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근무한 경력
- ④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
- ⑤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
- ⑥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
-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(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)
-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(응급구조학과)에서 조교·교수로 근무한 경력
- ⑨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
- ⑩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·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(구급대원 보조에 한함)

○ 유의사항

-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‘경력증명서’를 발급하여 **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**에 한해 인정
- 경력증명서상 기재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경력 인정이 가능
-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**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**

나. 제2차 면접시험

○ 면접방법 : 개별면접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정신자세,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평가요소 및 배점

평가요소 (5개 분야 60점)	수		우		양		가
	A <sup>+</sup>	A <sup>0</sup>	B <sup>+</sup>	B <sup>0</sup>	C <sup>+</sup>	C <sup>0</sup>	D
① 구급대원으로서의 적성·정신자세 (20점)	20	17	14	11	9	6	3
② 예의·품행·성실성 및 봉사정신 (10점)	10	8.5	7	5.5	4	2.5	1
③ 전문지식·기술과 응용능력 (10점)	10	8.5	7	5.5	4	2.5	1
④ 창의력·의지력, 발전가능성 (10점)	10	8.5	7	5.5	4	2.5	1
⑤ 의사발표의 정확성·논리성 (10점)	10	8.5	7	5.5	4	2.5	1

- 불합격 기준 : 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% 미만의 점수를 평정하거나, 각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총 합산한 평균점수가 총점의 50% 미만인 경우

다.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3개월 이내**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

## VI 근무조건

가.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
※ 계약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나.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: 주 52시간 범위 내 주간2교대(주/비/주/비) 근무

구 분	근무시간	휴게시간
주 간	09:00 ~ 21:00 (10H)	12:00 ~ 13:00 (1H) 18:00 ~ 19:00 (1H)

※ 출동 등으로 휴게시간 미보장 시 휴게시간 조정 가능

○ 근무유형 : 주간 2교대(주/비/주/비)

월	화	수	목	금	토	일	월
주	비	주	비	주	비	주	비

※ 예상채용인원 미달 시에는 근무유형을 달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이송건수에 따라 근무시간 가감 또는 근무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

(변경근무 예시)

- 일 근무 : 09:00 ~ 18:00 (주 5일 근무)
- 3교대 :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(21주기)
- 4교대 : 주야비휴

다. 담당업무

-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업무
- 전담구급차 운전(가능자) 및 출동준비 등

라. 근무시간 및 보수조건

근무시간	보 수
- 주 평균 37.5시간, 주간 2교대(주/비/주/비) ※ 계약체결 시 변동될 수 있음	부산시 생활임금 기준단가 ※ 기준시급 : 10,868원(2022년)

- 지급방법 : 근로예정기관에서 근로자 개인계좌로 일괄 입금
- 4대보험 등 : 근로예정기관에서 가입

마. 출동방법 : 출동대는 소방공무원 +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고 소방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활동 보조(운전포함)

< 편성(안) >

**구급대 2 보유**

1선 구급대			+	2선 구급대			+	전담구급대	
운전	주처치	보조처치		운전	주처치	보조처치		운전	환자관리
소방	소방	기간제		소방	소방	기간제		소방	소방

**구급대 1 보유**

일반 구급대			+	전담구급대			
운전	주처치	보조처치		운전	환자관리		
소방	소방	기간제		소방	기간제	기간제	(원칙)
소방	소방	기간제	기간제	소방	기간제	(예외)	

√ 일반적인 경우 원칙대로 운영. 단, 응급처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(운전가능자) 운전 가능.

바. 보 수 : 약 285만원 내외

- 기본임금 : 시급 10,868원 ※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(식대, 교통비 등 포함)
- 수 당 :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가산, 휴일근로가산, 코로나19대응수당, 명절휴가비, 주차(휴)수당 및 연차수당  
※ 계약종료 후 일괄 지급, 명절휴가비는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해 지급

사. 기 타

- 4대 보험(건강·연금·산재·고용) 가입, 연차유급휴가 부여
- 공 제 : 근로소득세, 주민세,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등

아. 경력인정

- 기간제 근무기간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(응시자격 등의 기준)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 요건의 경력 인정  
※ 다만, 졸업예정자는 자격(면허) 부여받은 날짜부터 인정
-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(호봉의 재확정)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

## VII 응시자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 목록

- 응시원서 <별지 1호>

- 이력서 <별지 2호>
- 자기소개서 <별지 3호>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<별지 4호>
-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<별지 5호>
-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
  - \* 졸업예정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증명서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 1부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
-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포함) 1부
-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(재직)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운전경력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#### 나.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

- 면허증 및 자격증
  -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(자격상실 등의 경우 합격취소)
- 주민등록초본
  -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부산·울산·경남 전입일자 및 병역사항이 확인 가능해야함
- 경력(재직)증명서
  -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해 인정
    - ※ 근무부서, 기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, 연락처 포함)
  - 해당 기관(회사)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
    - 【별지 6호】 서식으로 작성·제출 가능
  - 폐업회사의 경우 【별지 7호】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제출
  - 경력인정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공적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첨부
- 전자우편으로 원서 제출시 전체파일을 스캔하여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제출

- ▶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▶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VIII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나.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.
- ※ 반환대상 원본서류 :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  - 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: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~ 14일 이내
- 다.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첨·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,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 등은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가능하며 접수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라. 원서접수가 완료된 응시자에게는 휴대폰 SMS로 별도 안내 예정이나 최종 접수 완료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마.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·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,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응시원서 등에 허위·착오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,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차.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카.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시간 : 평일 근무시간 내(09시 ~ 18시)

<b>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</b>	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(전화 051-760-3023)
<b>업무 관련 문의사항</b>	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(전화 051-760-3117)

- 붙임 1. 119안전센터·구조대·소방정대의 명칭·소재지 및 관할구역
2.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별지 서식
- 【별지 1】 응시원서(서식) 1부
  - 【별지 2】 이력서(서식) 1부
  - 【별지 3】 자기소개서(서식) 1부
  - 【별지 4】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) 1부
  - 【별지 5】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서식) 1부
  - 【별지 6】 경력증명서(서식) 1부
  - 【별지 7】 근무경력 사실확인서(서식) 1부